

안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34
----------	------

제출년월일 : 2006. 02. .
제출자 : 안산시장

제안이유

-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을 위한 포상금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급기준 완화 및 한도액 확대 등으로 징수 의욕을 높임으로써 지방세입의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골자

- 가. 조례의 사용 용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
- 나.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 포상금 신청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라.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마. 잘 못 지급된 포상금의 환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개정 조례안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06. 1. 18. ~ 2006. 1. 28.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

안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세입”이라 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다만, 세외수입은 전액이 안산시 수입금으로 귀속되는 경우에 한한다.
2. “공무원”이라 함은 안산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3. “과년도 체납액”이라 함은 직전 회계연도가 폐쇄되기 전에 부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4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1.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직접 수행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결손처분한 세입을 징수한 공무원
3. 벼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세입을 징수한 공무원
4.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다만, 제안 등이 채택되고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부과자료를 제보하여 세입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

제4조(지급기준) 제3조에 의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직접 수행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은 다음 각 목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 가.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 징수 : 징수액의 100분의 1
 - 나.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 징수 : 징수액의 100분의 3
 - 다.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 징수 : 징수액의 100분의 5
2. 결손처분된 세입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은 징수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3. 벼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지방세입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은 징수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4.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은 징수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5. 벼려지거나 숨은 세원에 대한 부과자료를 제보하여 징수하게 한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은 징수액의 100분의 5로 한다.

제5조(지급한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한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1. 제1호 내지 제3호 : 월별 100만원. 다만,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월별 400만원으로 한다.
2. 제4호 및 제5호 : 300만원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포상금 지급 신청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 : 세입금 수납사실이 확인된 날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
2. 민간인 : 세입금 수납사실이 확인된 날.

②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세입징수포상금신청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인의 경우에는 해당 세입을 징수하는 실·과·소·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 시장(다만, 제3조제1호 및 제2호 관련 포상금 신청은 해당 구청장에게 한다)
 2. 구청 및 동사무소 : 해당 구청장(세무과)
- ③제2항에 의하여 포상금 신청을 받은 구청장 및 실·과·소·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①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산시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포상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가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대장비치)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대장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2. 지방세제도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식견을 갖춘 민간인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정한 지급대상
2. 제4조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준
3. 제5조의 규정에 정한 지급한도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에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1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환수)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도착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2조(권한의 위임 등) 시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이미 징수한 과년도 체납액 또는 세입에 대한 포상금은 종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소관 실·과		세정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세정과장 김진근
	담당·팀장 직위·성명	세정담당 서근식
	담당자 성명·전화	박성규 (행정 2198)

[별지 제1호서식]

세 입 징 수 포 상 금 신 청 서

세입구분	세 입 내 액		포상금(원)	비고
	전수	세액(원)		
합 계				
제3조제1호				
제3조제2호				
제3조제3호				
제3조제4호				
제3조제5호				

「안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 속(민간인의 경우 주소)

직 급(민간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안산시장 귀하

첨 부	
-----	--

[별지 제2호서식]

체 납 세 징 수 내 역 서

1. 세입징수 공적자

소속(민간인의 경우 주소)	직급(민간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성명

2. 세입징수 내역

연번	체 납 자		징 수 내 역						포 상 금	
	성명	주민등 록번호	유형	세목	부과일	과세번호	세액	수납일	비율 (%)	금액 (원)
합계										

「안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안산시장 귀하

첨 부

[별지 제3호서식]

세 입 증 대 내 역 서

1. 세입증대 공적자

소속(민간인의 경우 주소)	직급(민간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성명

2. 세입증대 내역

연번	분 야		납 부 자		징 수 내 역				포 상 금	
	유 형	세목	성명	주민등 록번호	부과일	과세 번호	세액	수납일	비율 (%)	금액 (원)
합계										

「안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소
직
성
속
위
명

(인)

안산시장 귀하

첨 부

[별지 제4호서식]

세입장수포상금지급대장

안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434
----------	------

제안년월일 : 2006. 2. 16.

제 안 자 : 의회 · 행정위원장

□ 수정이유

- 세입징수포상금 신청 부서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세입징수 포상금 신청부서를 명확히 함(안 제6조제2항제1호)

안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 시장(세정과). 다만, 지방세 징수금에 대한 포상금 신청은 해당 구청장에게 한다.**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p>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생략)</p> <p>②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세입징수포상금신청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인의 경우에는 해당 세입을 징수하는 실·과·소·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p> <p>1.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 시장(다만, 제3조제1호 및 제2호 관련 포상금 신청은 해당 구청장에게 한다)</p> <p>2. (생략)</p> <p>③ (생략)</p>	<p>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원안과 같음)</p> <p>②</p> <p>1.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 시장(세정과). 다만, 지방세 징수금에 대한 포상금 신청은 해당 구청장에게 한다.</p> <p>2. (원안과 같음)</p> <p>③ (원안과 같음)</p>